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86
----------	------

발의연월일 : 2017. 2. 8.

발의자 : 이양수 · 황영철 · 김도읍
지상욱 · 김기선 · 김태흠
홍문종 · 황주홍 · 김종태
안상수 · 이종배 · 김영춘
의원(12인)

제안이유

2013년 2월 23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의무자조금의 설치 ·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농수산물은 인삼과 친환경농산물에 불과하며, 의무자조금단체의 자율적 수급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당 품목의 경영규모(재배면적, 매출액 등)를 기준으로 의무거출금을 산정하되 이와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나.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고 구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6조).
- 다. 의무자조금 사업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 라.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 마.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함(안 제19조의2).
- 바. 의무자조금 설치 이후 설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6항).
- 사. 의무자조금위원회가 자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아.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자조금 조성 목적으로 자조금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을 “회원의 범위, 해당 품목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원을 대표하는 해당 농수산업자 대표의 연명부 등을 포함한다), 설치목적 및 재원확보 방안”으로, “농수산업자”를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자조금을 설치한”을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를 결의한”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한도”를 “산정기준 및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회원별로 해당 품목의 지배면적이나 매출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업자(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를 “농수산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요구하는”을 “요구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계획·운용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운용계

획”을 “사업계획”으로,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변경”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사업계획과 운용계획의”를 “사업계획의”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총회의 의장이 수행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용계획안을”을 “사업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계획은”을 “사업계획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계획”을 각각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분의 2”를 “총사업비의 20퍼센트”로, “운용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운용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해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 본문 중 “생산량 또는 생산액이”를 “생산량 등이”로,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를 “생산량 등에서”로, “미만일”을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으로 한다.

제2장에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 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신고와 출하신고
 2. 시장출하기준 지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농수산업자의 의무)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 시행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유통 자율조절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4(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생산·유
통 자율조절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제3호 중 “운용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운용계획안을”을 “사업계획안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운용계획을”을 “사업계획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약 등 임
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를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
수산업자 100분의 5”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통계의”를 “통계 및 통계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를 작성”을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으로, “관련 통계를”을 “관련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를”을 “통계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계의”를 “통계등의”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원활한 자조금 조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연간 소득 등을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 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폐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의2.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무거출금의 <u>한도</u>)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p>	<p>제8조(의무거출금의 <u>산정기준 및 한도</u>) ① -----하며, 회원별로 해당 품목의 지배면적이나 매출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총회의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p>	<p>제10조(총회의 운영) ① -----</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 -----.</p>
<p>1. (생 략)</p> <p>2. 재적 <u>농수산업자</u>(제28조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 는 <u>해양수산부장관</u>이 작성하 는 <u>농수산업자의 수를 기준으</u> 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 는 경우</p>	<p>1. (현행과 같음)</p> <p>2. ----- <u>농수산업자의</u> ----- -----</p>
<p>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 리위원회의 위원장이 <u>요구하</u> 는 경우</p>	<p>3. ----- ----- <u>요구하</u> 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p>
<p>4.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야 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 ----- -----.</p>
<p>1. (생 략)</p> <p>2. 의무거출금의 <u>금액</u> 및 <u>한도</u></p> <p>3. 의무자조금의 <u>사업계획·운용</u> <u>계획</u> 및 결산</p> <p>4. <u>운용계획</u> 중 <u>농림축산식품부</u> <u>장관</u>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u>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 액 <u>변경</u>(10분의 2 이하로 변</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산정기준</u>-----</p> <p>3. ----- <u>사업계획</u>---</p> <p>4. <u>사업계획</u>----- ----- ----- ---<u>변경</u></p>

<p><u>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5. ~ 12. (생 략)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2. (생 략) 3. 의무자조금 <u>사업계획과 운용 계획의</u> 수립·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p> <p>4. ~ 9. (생 략)</p> <p><u><신 설></u></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u>운용계획안을</u>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p>	<p>5.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업계획의</u> --- ----- -----</p> <p>4. ~ 9. (현행과 같음)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총회의 의장이 수행한다.</p> <p>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 ----- <u>사업계획안을</u> ----- ----- ----- ----- -----. ② -----</p>
---	---

<p><u>운용계획은</u>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p> <p>③ (생 략)</p> <p>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u>운용계획</u>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u>운용계획</u>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u>10분의 2</u>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u>운용계획</u>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p> <p>⑥ · ⑦ (생 략)</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u>운용계획</u> 수립·변경</p>	<p><u>사업계획은</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사업계획</u>----- ----- ----- ----- ----- ----- ----- -----<u>사업계획</u>----- ----- ----- ----- ----- ----- ----- ----- -----<u>사업계획</u>----- ----- ----- ----- -----.</p> <p>⑤ ----- -----<u>총사업비의 20퍼센트</u>----- ----- ----- ----- ----- ----- ----- ----- -----<u>사업계획</u>----- ----- ----- ----- ----- ----- ----- ----- ----- -----.</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 ----- ----- ----- ----- ----- -----<u>사업계획</u>-----</p>
--	---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생략) <u><신설></u>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동일 품목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해야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	③ 제1항 및 제2항에

<p>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u>③ (생략)</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p> <p>-----.</p> <p><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 <p><u>⑤ -----제4항까지에서</u></p> <p>-----</p> <p>-----</p> <p>-----</p> <p>-----.</p>
<p><u><신설></u></p> <p>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p> <p><u>⑤ (생략)</u></p> <p><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 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u>생산량 또는 생산액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정</u></u></p>	<p><u>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u></p> <p>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p> <p><u>⑤ (현행과 같음)</u></p> <p><u>⑥ -----</u></p> <p>-----</p> <p>-----</p> <p>-----<u>생산량 등이</u>-----</p> <p>---<u>생산량 등에서</u>-----</p> <p>-----</p> <p>-----</p> <p>-----<u>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u></p>

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신 설>

단체가 제6조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다음 각 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농수산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경작신고와 출하신고

2. 시장출하기준 지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농수산업자의 의무) 제21조의2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이 시행되면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유통 자율조절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의4(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집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p><u>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집행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둔다. 1. · 2. (생략) 3. 임의자조금의 <u>운용계획</u> 수립·변경과 결산 4. (생략)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업계획</u> ----- ----- 4.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생략) ② 임의자조금단체는 임의자조금 <u>운용계획안을</u> 작성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u>운용계획</u>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략)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업계획안을</u> ----- ----- ----- ----- -----. ----- <u>사업계획</u> 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재적 농수산업자(임의자조금단체에 소속된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의자조금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통계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및 계
약 등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
-----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
다)를 작성-----
----- 관련 통계등을-----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④ -----통계등의-----

-----.

제28조의2(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이용)

①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원활한 자조금 조성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연간소득 등을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제공 받은 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출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의원 선거가 끝나

	<p><u>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u></p> <p><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폐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제37조(과태료) ① (생 략)	제3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유통한 자</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